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현장조사 권한을 부여함(안 제34조제5항).

II. 검토의견

-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수정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제시함(주서본 참조).

(“국토교통부장관의 현장조사 권한”을 별도 항으로 분리·규정할 필요)

-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반침하 발생 우려지역의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권한을 부여하는데, 현행법 제35조제5항에 이를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형식임.

그런데, 현행법 제35조제5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업무상 부여된 통상적인” 현장조사 권한을 규정하는 조항으로,¹⁾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반침하 발생 우려 시” 현장조사

권한을 추가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시설물 관리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법문언과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개정안의 내용을 현행법 제35조제5항과는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현장조사 대상 지역과 관련하여서도, 현행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이나 시·도지사의 “관할 구역”으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지반침하 발생 우려가 있는 “전국의 모든 지역”이 대상이므로 그 범위가 상이하다는 측면 등을 고려하여,

관련 사항을 제6항에 별도로 규정하는 수정의견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제시함.

<수정의견>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34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① ~ ④ (생략)	제34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34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① ~ ④ (개정안과 같음)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란 개발·이용·관리의 대상이 되는 지표면 아래를 말한다.
2. “지반침하”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은 현상을 말한다.
3. (생략)

4. “지하시설물”이란 상수도, 하수도, 전력시설물,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공동구, 지하차도, 지하철 등 지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제34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
변 지반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
시설물 및 주변 지
반에 대한 안전관
리 현황을 파악하
기 위하여 현장조
사를 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관계-----

⑤ 관계-----

<신 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안전
관리 현황을 파악
하기 위한 현장조
사를 할 수 있다.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